

「평창군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본 조례안은 2023년 9월 5일 박춘희 의원이 발의하고, 2023년 9월 1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차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임.

1. 제안이유

「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」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평창군민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목적 및 용어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
나. 군수의 책무, 군민의 권리와 의무 규정(안 제3조 ~ 제4조)

다.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(안 제5조)

라. 보행자 중심의 환경 조성(안 제6조)

마. 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 및 지원근거 마련(안 제7조)

바. 보행안전문화 활성화(안 제8조)

사.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기능, 구성, 운영 규정(안 제9조 ~ 제 10조)

3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체계의 전환을 도모하고
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,

○ 보행약자를 포함한 보행자 중심의 환경을 조성토록 하고,
보행불편 해소 및 보행안전문화 활성화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.

○ 「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」에서
자치단체로 위임한 사항과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에 필요한 사항을
규정하여 **상위법의 취지와 부합하는 보행권 확보 및 보행문화
확산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**하였습니다.

○ 검토결과,

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

※ 관련 입법례: 전국 89개 지자체, **도 내 2개소**(강릉, 동해)